

유통현황 등의 기록·보관 및 보고의 기준(제6조 관련)

1.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기록·보관해야 할 사항

구 분	기 록 시 기	보관기간
1. 취급자 가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날짜, 수량 및 수출입처 나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날짜, 수량 및 취득처 다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날짜, 수량 및 판매처 라.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날짜 및 수량 (측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치 가능) 마. 처리·처분 또는 재활용한 공정부산 물의 종류, 수량 및 처리일시 바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사 항 및 날짜 사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· 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2. 등록제조업자 가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날짜, 수량 및 취득처 나. 제조·수출입 또는 판매한 가공제품 의 종류, 모델명, 수량, 수출입 또는 판매 날짜 및 수출입처 또는 판매처 다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사 항 및 날짜 라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· 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	수출입한 때마다 취득한 때마다 판매한 때마다 발생한 때마다 처리·처분 또는 재활 용한 때마다 조치한 때마다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취득한 때마다 제조·수출입 또는 판 매한 때마다 조치한 때마다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5년

2.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

구 분	보 고 기 한
1. 취급자 가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 현황 나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및 판매 현황 다. 공정부산물의 처리·처분 및 재활용 현황 라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 마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·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	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해당 조치 후 1개월 이내 매년 1월 31일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
2. 등록제조업자 가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현황 나. 가공제품의 제조·수출입 및 판매 현황 다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 라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·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	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매년 1월 31일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